**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-0887호**

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 요건 및 신청·접수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15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## 1. 개요

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하고자 함

## 2. 신청자격(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1항)

가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
나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
다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라. 그 밖에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·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장비성능평가에 관한 전문성*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·단체

* 전문성 여부는 심의과정에서 지정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 예정

## 3. 지정품목: 주사전자현미경, 유전자증폭·합성·분석장치

※ 품목별로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하며 1개 품목에 다수 기관 지정가능

## 4. 제출기한 및 서류

가. 제출(접수)기간 : 2022. 10. 5. ~ 2022. 10. 24. 14:00

나. 제출서류

| 번호 | 서 류 명 | 서식 | 첨부서류 |
|---|---|---|---|
| 1 |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| 붙임2 | |
| 2 | 신청 연구장비 품목에 대한 성능평가 절차서 | - | · 관련 표준규격(사본) |
| 3 | 신청기관 정관 | - | |
| 4 | 기관 일반현황 | 붙임3 | |
| 5 |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 | 붙임4 | |
| 6 |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| 붙임5 | · 학위증명서/졸업증명서<br>· 재직증명서<br>· 경력증명서* |
| | * 연구장비 개발 및 시험·검사·교정·인증 업무가 경력증명서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 **별도서류 (자율양식)**를 통해 증빙 필요 | | |
| 7 | 기관의 사무·시험공간 및 설비 현황 | 붙임6 | · 사무·시험 공간* |
| | * 공간별로 모두 제출, 시험공간에 대한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 시스템 확인이 가능해야 함 | | |
| 8 | 국제표준규격(ISO/IEC 17025)에 따른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획득 또는 동등한 자격* 증빙 | - | |
| | * 동등한 자격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자료 추가요구 가능 | | |
| 9 |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운영 규정 | - | |

다.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(krndinst@compa.re.kr)

※ 반드시 PDF 형태로 원본대조필 날인(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) 제출하되, 소속회사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제출

라. 문의 :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연구장비재료팀 연구장비 성능평가 담당자

1) 전화 : 02-736-9044, 9047

2) e-mail : krndinst@compa.re.kr

## 4. 성능평가기관 지정 방법

가. 지정 절차

| 성능평가 기관 지정 공고 | → | 지정신청서 등 제출 (~10.24.) | → | 접수 및 보완요청 (~10.31.) | → | 지정요건 충족여부 심사 (11~12월) | → | 성능평가 기관 지정 고시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| | 신청기관 | |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| | 기술심의위원회 (분과별 운영) | |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|

나. 지정요건 충족여부 심사방법

1) 연구장비 및 적합성 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심사 추진

※ 지정품목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

2) 기술심의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, 현장실사(필요시) 및 발표평가 등을 병행

※ 상세계획은 지정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 예정

3) 신청기관이 제출한 성능평가 절차서 등 일부 서류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속 수정·보완 요망

다. 기본적인 요건(조직·인력 보유,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등)을 충족하더라도 성능평가 절차서, 업무계획서 등이 성능평가 수행에 부적정한 경우, 지정요건 '불충족'으로 판단

## 5. 신청 시 유의사항

가.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나. 성능평가기관 지정 절차 진행 시 지정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제출 서류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이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·조작 여부가 확인될 경우 탈락 또는 지정 취소될 수 있음

## 붙임 1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에 대한 세부요건

| 항목 | 심사 항목(세부 요건) |
|---|---|
| 필수자격 | 1. 신청 연구장비 품목에 대한 성능평가 절차서를 보유할 것 |
| 조직 | 1. 성능평가 수행에 적합한 조직을 보유할 것<br>2. 해당 조직이 국제표준규격(ISO/IEC 17025)에 따른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출 것<br>3. 해당 조직이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내부 운영규정을 보유할 것 |
| 인력 | 1. 성능평가 조직이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이공계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을 보유할 것<br>2. 성능평가 조직이 연구장비 개발 또는 시험·검사·교정·인증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|
| 사무 및 시험공간 | 1.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갖출 것<br>2. 다른 업무공간과 분리된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 시험공간을 갖출 것<br>3. 해당 시험공간이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 |
| 설비 | 1. 신청 연구장비 품목에 대해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|

**붙임 2** **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**

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

#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| 접수번호 | | | 접수일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실무 담당자 | 성명 | 직위 | 전화번호(팩스번호) | 전자우편주소 |
| 신청기관 | 기관명 | (기관명)<br>(홈페이지) | 설립 연월일 | |
| | 대표자명<br>(성별/생년월일) | | 법인등록번호 | |
| | ①소재지 | | 전화번호 | 팩스번호 |
| | | | | |
| ②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 분야 | [ ] 광학·전자영상장비 [ ] 화합물 전처리·분석장비<br>[ ] 물리적 측정장비 [ ] 그 밖의 연구장비(연구장비 소프트웨어 등) | | | |

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관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**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** 귀하

| | | |
|---|---|---|
| 신청인 제출서류 | 1. 신청기관의 정관<br>2. 「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관 일반 현황<br>3. 「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<br>4. 「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<br>5. 「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관의 사무·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 | 수수료<br>없음 |
|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| 1. 사업자등록증<br>2.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| |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기관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##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작성방법

1. ①의 “소재지” 란에는 신청기관의 주된 소재지(본사)를 작성합니다.
2. ②의 “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 분야” 는 신청기관이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할 연구장비의 유형(중복 가능)을 작성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## 붙임 3 기관 일반 현황

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서식]

# 기관 일반 현황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| | |
|---|---|
| ①설립 목적 | |
| ②기관 연혁 | |
| ③임무 및 비전 | |
| ④주요 업무 | |
| ⑤조직도 | |

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## 기관 일반 현황 작성방법

1. ①의 “설립 목적” 란에는 기관 정관상의 목적을 작성합니다.
2. ②의 “기관 연혁” 란에는 기관의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연혁을 작성합니다.
3. ③의 “임무 및 비전” 란에는 기관에서 공시하는 기관의 임무, 비전, 핵심역할, 핵심전략을 작성합니다.
4. ④의 “주요 업무” 란에는 기관 정관상의 주요 업무(사업)를 작성합니다.
5. ⑤의 “조직도” 란에는 기관에서 공시하는 조직체계를 작성합니다.

※ 작성 매수의 제한은 없으며,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**붙임 4** **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**

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

#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| | | |
|---|---|---|
| 추진 목적 | | |
| 추진 전략 | | |
| 추진계획 | ①전담조직 구성·운영 방안 | |
| | ②전담인력 확보·관리 방안 | |
| | ③업무 수행 방안 | |
| ④기대효과 | 정량적 효과 | |
| | 정성적 효과 | |

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##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 작성방법

1. ①의 “전담조직 구성·운영 방안” 란에는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방안과 운영 계획을 작성합니다.
2. ②의 “전담인력 확보·관리 방안” 란에는 「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」 제11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인력의 확보 방안과 교육·훈련 등 인력 관리계획을 작성합니다.
3. ③의 “업무 수행 방안” 란에는 신청의 접수·관리, 시험·검사 수행, 결과서의 발급 등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의 전반적인 수행 방안을 작성합니다.
4. ④의 “기대효과” 란에는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를 통해 정책적, 사회적 또는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파생 가능한 효과를 정량적(수치화), 정성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(정량적 효과는 산출 근거 또는 기준을 명시합니다).

※ 작성 매수의 제한은 없으며,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**붙임 5** **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**

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

#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①조직 현황

②인력 현황

| 일련번호 | ③직위 | 성명 | 성별 | 생년월일 | ④소속 부서 | ⑤최종 학교 (전공학과) | ⑥최종 학위 | ⑦경력 | ⑧전문 분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 | | |

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| | |
|---|---|
| 첨부서류 | 1. 해당 인력의 최종 학교 및 최종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<br>[해외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는 영문 또는 국문(공증) 졸업증명서 사본을 말합니다]<br>2. 해당 인력의 재직증명서<br>3. 해당 인력의 경력증명서 |

##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작성방법

1. ①의 "조직 현황" 란에는 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에 적합한 부서 단위의 조직 현황을 작성하되, 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에 적합한 부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직 현황을 모두 작성할 수 있습니다.
2. ②의 "인력 현황" 란에는 ①의 "조직 현황" 란에 작성한 조직 내의 인력 현황을 작성합니다.
3. ③의 "직위" 란에는 신청기관에서 부여한 직위 또는 직급(예 :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 등)을 작성합니다.
4. ④의 "소속 부서" 란에는 해당 인력의 소속 부서명을 작성합니다(①의 "조직 현황" 란에 하나의 조직 현황만 작성한 경우에는 빈칸을 두어도 됩니다).
5. ⑤의 "최종 학교" 및 ⑥의 "최종 학위" 란에는 해당 인력의 최종 학교명 및 최종 취득학위를 작성합니다.
6. ⑦의 "경력" 란에는 해당 인력의 신청기관 근무경력과 이전 근무경력을 모두 포함하여 연단위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작성합니다(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해야 합니다).
7. ⑧의 "전문 분야" 란에는 다음의 4개 분야 중 해당 인력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전문 분야 하나를 작성합니다(1. 광학·전자영상장비, 2. 화합물 전처리·분석장비, 3. 물리적 측정장비, 4. 그 밖의 연구장비)

※ 작성 매수의 제한은 없으며,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**붙임 6** **기관의 사무·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**

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15호서식]

# 기관의 사무·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①사무·시험 공간 현황

| 연번 | 공간명 | ②공간 구분 | ③건물 형태 | 면적(㎡)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[ ] 사무<br>[ ] 시험 | [ ] 독립<br>[ ] 분리 | |

④설비 현황

| 일련번호 | 품명 | 모델명 | 단가(백만원) | 수량 | 제작회사(국명) | ⑤설치장소 | 도입일 | ⑥자산번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| | | |

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| 첨부서류 | 사무·시험 공간 사진(공간별로 모두 제출합니다) |
|---|---|

## 기관의 사무·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 작성방법

1. ①의 "사무·시험 공간 현황" 란은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공간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.
2. ②의 "공간 구분" 란은 시험·검사를 위한 공간은 "시험"으로, 그 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은 "사무"로 표기합니다.
3. ③의 "건물 형태" 란은 건물 전체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·시험 공간인 경우에는 "독립"으로, 건물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"분리"로 표기합니다.
4. ④의 "설비 현황" 란은 ①의 "사무·시험 공간 현황"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만 작성하되, 구입단가가 높은 순서로 작성합니다(사무책상, 팩스, 전화기, 복사기 등과 같은 사무용 기기와 서버, 허브 등과 같은 통신수단은 설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).
5. ⑤의 "설치장소" 란에는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·시험 공간의 명칭을 적습니다.
6. ⑥의 "자산번호" 란에는 신청기관에서 부여한 자산관리번호를 적습니다.

※ 작성 매수의 제한은 없으며,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